

손해보험을 통한 방재기능의 확충방안



박종원
(재무부 서기관)

방재전문기관이
전무하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 또한 부족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방재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게 하고 있다.

1. 문제의 제기

끊임없는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예고없이 둘 이타치는 인위적·자연적 재해는 작게는 한 개인의 생활상 불편으로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안위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각양각색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은 고래로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라 하겠다.

손해보험이 동일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각출하여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손해를 경감 내지는 제거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주된 기능과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해에 대한 예방교육 및 재해방지의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부수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제도는 전자의 측면에서는 관계기관의 재도개선과 업계의 실천적 노력에 힘입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와, 개인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재생산능력 확보를 통한 사회·경제적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위험물건의 거대화와 손해의 대형화 추세로 보험을 통한 손해방지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낙후된 바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나 국가안보적 견지에서 볼 때 허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행의 손해보험제도중 방재에 부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첫째, 보험사업자의 위험관리 기능이 손해의 안정화를 통한 이윤추구라는 위험의 사전예방 기능보다는 재보험거래를 통한 위험분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

둘째, 보험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미흡

셋째, 요율체계의 미흡

- 요율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계집적의 미흡
- Merit, Demerit System운영의 미흡

넷째, 보험금 지급체제의 다양성 미흡

- No Claim Bonus

- 과실상계제도

- 시설보수시의 대부채도

다섯째, 방재전문기관이 전무하고 이에따른 전문인력 또한 상당히 부족하여 60~70년대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방재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방재에 대한 교육제도상의 불비점이 많은 바, 현행 한국보험공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보험연수원의 정식 교육과정에 방재과목이 한 과목도 들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보험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체 교육과정에서도 예외없이 방재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제안에서는 상기와 같은 방재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가 안전보장의 증진을 동시에 기하고자 손해보험의 현행제도를 개발해보고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손해보험의 실천적 견지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2. 방재와 관련한 손해보험제도 및 기구현황

가. 보험종별 보험료 구성내역

보험료의 구성요소 중 독립항목으로서의 방재비부분은 없고 단지, 화재보험사업비 부분중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부분비용만큼 간접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나. Merit, Demerit System의 도입 상황

도입종목이 자동차보험 등 극히 제한적이고 그 유형도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 등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의 일시남에 따른 혜택정도가 주어지고 있을 뿐이다.

(단위 : %)					
종목별	구분	위험준비금	사업비	이익준비금	비고
○화재보험	화재보험	50	45	5	○화재방재사업비 ('82기준)
	해상보험	60	35	5	
○특종보험	종합보험	50	45	5	1,511백만원
	근재보험	70	25	5	
○기관기계보험	기관기계보험	50	45	5	
	건설공사보험	50	45	5	
○조립보험	조립보험	50	45	5	
○자동차보험	차배책	(사) 92.01	7.99	-	
	차배책	(비) 75.34	24.66	-	
○종합(대인)	(사) 94.5	5.5	-	-	
	(비) 71.5	28.5	-	-	
○자기종합		67.6	32.4	-	
		50	45	5	
○보증보험					

주 : (사)→사업용, (비)→비사업용

다. 보험금 지급방법

1) 실손보상 및 비례보상

현재 손보사에서 영위중인 대부분의 보험종목이 보험금 액 또는 L.O.L을 한도로 실손해액을 보상, 다만 물보험인 경우 일부보험인 때에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진액의 비율로 보상하고 있다.

2) 정액보상

인보험의 일부종목의 경우 중복보험에 관계없이 치료일 1일당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고 있다.

3) 가도보험금 지급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해당액을 선지급하고 있다.

라. 방재비 지출현황('82기준)

보험료	방재비	비율(%)	비고
522,933	4,511	0.9	

(단위 : 백만원)

마. 방재기관 및 전문인력 현황

1) 방재기관

현재 운용중인 전문방재기관은 없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방재업무와 관련한 시험소를 설립중에 있다.

*방재시험소 개황

주요업무 : 방재시험연구, 방재기술정보처리, 보험가입물검위험관리, 각종 방재지침작성 등

인원 : 약 57명

설립예정일 : 84. 10

소요경비 : 45억원

2) 화재위험 방재전문 인력('81말 기준)

구분	정원	현 원				
		제	건축	화공	전기	기계
인원	181	175	39	45	46	45

3)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및 과목현황('83년도 기준)

구 분	초급과정	중급과정 (특종보험)	고급과정 (총대리점)	비 고
법 규	2	1	1	
약관 및	16	11	9	
보험관리				
회 계	1	-	-	
기 타	5	4	2	
방 재	-	-	-	

4. 손해보험의 개황

구 分	'73	'77	'82
(GNI)(억원)	52,383	170,214	482,679
국민소득(억원)	43,691	137,389	417,366
보험료(억원)	354	1,296	6,019
보험료 / GNP (%)	0.68	0.76	1.25
보험료 / 국민소득 (%)	0.81	0.94	1.44
1인당보험료(원)	1,039	3,559	15,304

3. 방재의 기능 및 중요성

가. 기능

세계각국은 신생, 화재, 자동차 및 지진 등의 대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자 국민각자는 물론이고 국가까지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이제 방재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의 하나로 그 위치를 굳하게 되었다.

1) 국가안보적 측면

방재능력의 향상은 전시에 지상 및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차단 내지는 피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전쟁수행 능력을 배가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방재업무를 국방과학의 한 분야로 연구개발, 국가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국무성, 내무성 등)에서 시험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단체(FM, UL 등)까지도 전시에 이 국방과학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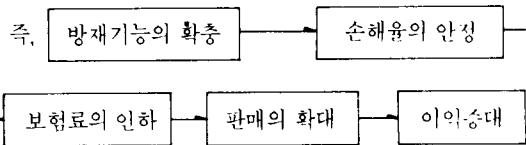
2) 사회복지적 측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대상은 물론이려니와 선사 부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은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손실이 아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의한 보상자체가 금전적 기초에 의한 것이므로 정신적인 보상은 그 어느 때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서 재해의 사전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경제적 측면

보험산업에 있어 손해율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의 안정을 꾀하지 아니하고서는 보험자에게 있어서는 적정 이익을 보장하기 어렵고, 동시에 보험가입자에게는 과중한 보험료를 물게 함으로써 보험의 전체 규모확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 중요성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북한괴뢰와 해방이래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 어느 때에 크나큰 위험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형편이다.

따라서 방재기능의 확충은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필수적인 업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방재능력의 취약성 때문에 미

국 B29 폭격기의 폭탄과 소이탄(燒夷彈) 투하로 군수산업 시설과 각종 연구소, 기타 공장 및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 당시 일내에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신무기생산이 지연되고 무기와 탄약의 결핍으로 패망의 비운을 맛보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영국과 소련은 방재능력이 고도로 발달해 독일공군의 폭격과 로켓공격을 잘 견디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 전승국이 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지진무풍지대였던 우리나라가 비록 약한 진동이긴 하여도 여러 차례 전국민의 가슴을 불안하게 하였던 사실은 방재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4. 개선방안

가. 보험사업자의 사전위험 관리기능 강화

우리나라 기업들도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는 있으나 선진제국과 같이 전담부서를 두어 위험관리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원인의 제거, 사고의 예방,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감 등 사전위험관리는 매우 낙후한 상태라 하겠다.

더우기 위험물건의 거대화와 대형이재의 빈발로 급격한 손해율 상승 등이 보험경영상 수지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차제에 손해율 안정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다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고객관리의 차원에서 보험사업자 스스로가 고객에게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하며 그와 같은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에도 다음과 같은 여려가지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 보험요율체계의 개편

1) 방법

각종 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방재사업비로 투자토록 해야 한다. 즉 방재사업의 전개에 따른 재해감축상당액의 일정률을 방재사업에 투자토록 한다.

방재투자비율은 보험료의 납부자와 피보험인이 대상자간의 연계성이 직접적이지 아니하므로, 방재성과에 따라 적정선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2) 기대효과

이미 설립된 한국손해보험료율산정회의 발족이 일천하여 각종 DATA의 집중관리 미흡 등으로 현행 손해보험의

보험요율 변경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요율체계의 합리적 재편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보험을 통한 재해예방의 인식이 또한 제고될 것이다. 즉, 보험사업자 및 보험가입자가 기존의 사후사고 실적에 의거하여 산출하던 보험료를 사전사고 예방부분을 감안하여 구성토록 함으로써 피보험자 및 보험사업자 모두에게 재해예방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이를 통한 사회전체의 재산적 가치보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다.

3) 시행상 문제점

방재사업비의 부가는 근래 ('83년 기준) 손해보험사업의 손해율이 악화일로에 있어 보험사업자의 경영에 심한 압박요인이 된다.

방재활동의 전개실적과 비례하여 어느 정도는 손해율이 개선되지만 그 측정이 곤란하여 보험금 환급규모의 결정이 곤란해진다.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로써 미가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방재서비스를 제공함은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간 형평에 어긋난다.

매년단위의 보험수지계산이 불가능해진다. 보험도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기 때문에 정태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립하여 손해율이 높을 때 보전재원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정손해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환입조치하고 있다.

다. Merit, Demerit System의 확대

1)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

가) 방안

현재 자가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차량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보험료를 전체 차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차량 중심요율체계와 운전자중심 요율체계의 병행제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동차사고는 차종 및 운행실태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사고를 야기시키는 것이 운전자이므로 차량중심의 요율과 운전자의 운전경력, 나이, 사고경력, 성별 및 결혼유무 등에 따라 운전자중심 요율체계를 병행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계획)

(1단계)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 개인면허 사업용차량(기령 1인)

(2) 대상 : 사업용 차량

(3) 과거 일정기간(2~3) 운전자의 사고기록 또는 위반기록에 의한 벌점제 도입

나) 기대효과

자동차사고율 개선에 화기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사고원인은 야기한 주체에 따라 보험요율이 형평성 있게 사용된다.

* 과실소재별 자동차사고 분석

구 분	쌍방과실	운전자과실	피해자과실	기 타	합 계
사고건수	33,117	27,297	1,924	1,333	63,971
구성비 %	52.2	42.7	3.0	2.1	100.0

* 5년간 (1980. 1. 1 ~ 12. 31)

다) 시행상의 문제점

- 우리나라 운전자의 대부분이 고용운전자이며 전직현상이 심하다.

- 특성운전자가 특정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있다.

-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기초자료의 전산화가 불비하여 통계의 추출이 곤란하다.

- 관리기관이 전산설비를 통하여 통계가 준비된다 하더라도 그 이용이 용이해져야 한다.

- 따라서 치안본부, 손보사 및 운수업체의 기록관리체계 완성을 위한 전산설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할인·할증제도의 확대

가) 방안

현재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및 균재보험 등의 일부 손해보험종목에서 손해실적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할인·할증요율제도를 시행 가능한 전손해보험에 확대 적용토록 한다.

국내에서 요율산성이 가능한 종목에만 적용토록 하고 외국에서 구축하여 사용하는 보험종목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별보험 등 정책적으로 그 저변확대가 요구되는 종목과 기타 종목을 구분하여 그 비율에 차등을 두도록 한다.

나) 기대효과

- 보험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사회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 세イヤ자 자신의 손해방지 노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사고율 방지에 도움을 준다.

3) 보험료의 사후정산제(Retrospective Rating System) 도입

가) 방안

- 당해 보험기간중의 손해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상산한다. 즉, 보험기간의 개시와 동시에 일정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후에 정산토록 하는 것이다.

- 개산보험료와 사후확정보험료간의 GAP이 심하지 않은 보험종목을 택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나) 기대효과

할인·할증율의 적용방식이 전기의 일정기간(3~5년) 중 손해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는 당해 보험기간중의 사고실적을 감안함으로써 당해 피보험자 내지는 보험계약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세우고자 한다.

다) 시행상 문제점

Moral Risk의 위험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 일부 보험사업자의 적극적인 채택의사가 필요하다.

라. 보험금지급제도의 다양화 유도

1) 과실상계제도의 확충(자동차보험)

가) 방안

현재 종합보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적용되고 있는 과실상계는 그 유형과 비율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이를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상계율 적용도표에 따라 상계도록 한다.

○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 : 40종

○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 : 40종

○ 이륜차와 4륜차간의 사고 : 60종

(참고 : 일본 동경지방법원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 과실상계율 등의 안정기준")

* 현행 과실상계율의 적용

	적용방법	비 고
장 래 비	과실비용 부적용	사례상에 부유한 경우
치료관계비	"	상비 보상, 피해자의 부상
위 자 료	피해자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상실수익액	"	

-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과실상계의 최고한도는 50%로 제한해야 한다.

나) 기대효과

자동차 전체사고중 피해자과실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보행인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이를 통하여 재해예방을 도모한다.

2) 무사고 배당금지급제도의 도입

장기보험에서 보험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경우만 기획금 이외에 무사고에 대한 추가배당금을 지급하는 제도 역시 계약자의 손해방지 노력을 어느정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3) 대부제도의 도입

장기보험에서 일정보험기간이 경과한 후 방재와 관련한 시설보수 등 비용을 대부하여 주는 제도의 도입은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No Claim Bonus 제도의 도입

단기성보험으로 보험료의 할인 할증이 어려운 보험종목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좋은 계약자에게 일정율에 의한 일정금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계약자의 손해예방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마. 방재기관의 확충(공동구상기구의 설립)

1) 필요성

보험에 존재하는 대위권(물상대(상법 제681조)과 제3자대위(상법 제682조)) 행사의 이행이 부진하여 전체 손해보험의 손해율실적이 과다책정되어 보험가입자에게 필요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이의 적정한 시정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사업자가 대위취득한 권리에 근거한 구상권행사의 근본목적이 부당이득금지를 통한 보험사고의 사전방지에 있으므로 이의 원활한 권리행사가 요청되고 있다고 본다.

2) 방안

- 조직

보험행사가 구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피구상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자의에 의한 고의적인 구상회피(동일계열기업등)에 있으므로 보험사업자와 독립된 외부기관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 인원

구상업무에 필요한 다음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도록 한다.

○법조계

○보험업계(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보험학계

- 경비

○매년을 단위로 하여 각 손해보험사업자의 구상대상전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에 사용하도록 하되,

○구상한 전액에서 우선 변제되도록 한다.

3) 기대효과

현재 보증보험만 하더라도 '82년 기준으로 미구상액이 약 665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미구상액을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첫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키고, 둘째, 보험에 대한 전체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4) 시행상 문제점

별도조직 운영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함.

*보증보험의 연도별 구상실적

(단위 : 백만원)

	지급보험금	구상금액	미구상금액	구상율
'77	3,080	2,021	1,059	65.6
'78	7,262	3,580	3,683	49.3
'79	14,809	6,934	7,875	46.8
'80	26,945	15,107	11,837	56.1
'81	21,153	10,227	10,925	35.3
'82	38,227	13,484	24,743	-

바. 화재방재연구소의 기능 확충

1) 방안

가) 기능

현재 설립추진중에 있는 방재연구소의 기능을 그 본래목적에 맞게 확충하도록 한다.

즉, 화재의 방지 및 이와 관련한 안전부문에 국한하여 연구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손해보험중의 인보험분야를 제외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나) 조직 및 인원

- 화재 이외의 손해보험 종목중 기술적으로 관리성이 있는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특별부서를 추가로 설립함.

- 이를 위한 전문인력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한다.

다) 경비

손해보험회사별로 동연구소의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방재연구 대상종목의 보험료중 일정비율로 충연하도록 하여

운영한다.

2) 기대효과

- 방재와 관련한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 손해보험 전반의 과학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즉, 위험관리의 개선과 보험료의 적정화 및 해외출수재의 역조현상까지도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사. 방재전문인력의 양성

1) 방안

- 한국보험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중 방재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다만, 내리집 과정은 제외시킨다.
- 손보협회 및 각 손보사의 자체교육시 방재부분을 어떠한 형태로든 포함시키도록 한다.

2) 기대효과

보험관련직원 전체에게 방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주입시킴으로써 보험의 모집 및 위험관리 등에 커다란 효과를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 홍보기능의 강화

고객관리의 차원에서 보험사업자가 무료로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방재활동의 주체는 피보험자 자신이 되는 바, 피보험자 스스로가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보험전반에 관한 지식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이 보험수요창출을 위한 직접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업계 공동홍보기구의 확대 및 기능의 확대가 매우 긴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신제품소개

적외선화재탐지기

-美피로텍터사-

용접, 낙뢰, 일광 및 기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선때문에 잘못 경보를 발하는 일이 없는 민감한 적외선 화재 탐지기.

미 피로텍터사(Pyrotector)가 내놓은 이 화재 탐지기는 신동만 가설할 수 있는 곳이면 옥내외 어디에나 가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면이 기후 변화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도록 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며 폭발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보통의 표준화재 경보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7백~1천 달러선.

